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관광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

2024/03/12



여수시 조례 제2049호

붙임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49호

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지를”을 “문화재, 문화·관광시설, 관광지 등 을”로, “입장료”를 “관람료, 입장료, 주차료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<u>문화관광지를</u> 방문할 때에는 <u>입장료</u>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7조(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 <u>문화재</u>, <u>문화·관광시설</u>, <u>관광지</u> 등을 -----</p> <p><u>관람료</u>, <u>입장료</u>, <u>주차료</u> 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